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동향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정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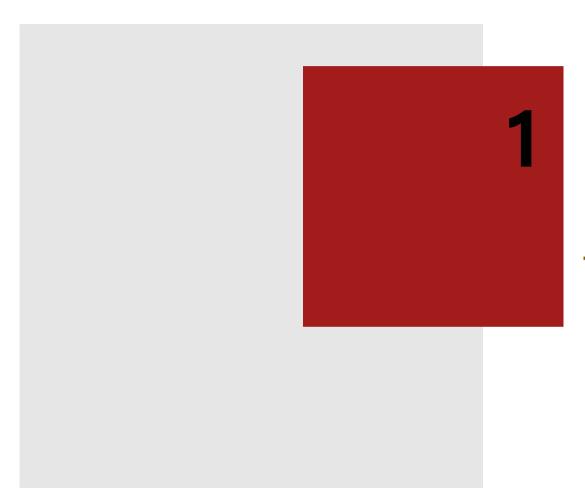






- 01 디파이(DeFi) 프로젝트 규제 현황
- 02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 금융 규제
- 03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 형사 규제
- 04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에 관한 소고





디파이 프로젝트와 규제 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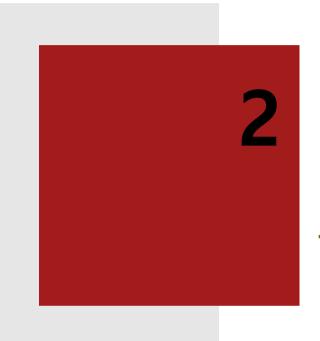
- 지난 수 년간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 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위 사업 관련 정확히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와 관련 금융/수사 당국의 규제 내지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 가늠하기 어려웠음
- 최근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희망 사업자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 않는다는 법률의견 제출 요구 받았으나, 법적 근거 모호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처리한 사례도 없음
- 지금껏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 주체들에게 적용 여부 확인된 법률은 형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대부분, 최근 FATF 권고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되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개념 및 기본적 권리의무 규정되었으나 충분치 않음



1. 현황 및 문제점

- 이러한 불투명 상황은 다수 디파이 프로젝트들 출현 후 거래 규모 등이 크게 성장하고, NFT(Non-Fungible Tokens) 등 신종 가상자산 출현하고 있는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음
- 금융당국은 디파이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하며,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경고성 의견만 난무하여 혼란 초래 중
- 이러한 상황에서 디파이 프로젝트 및 NFT 등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법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상 어떤 규제들이 적용 가능한지, 이와 관련 업계에서 대두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의 당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디파이 프로젝트 등 관련 금융 규제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

*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이용 통해 획득한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상법상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제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 이전 / 보관 또는 관리 / 매도, 매수, 교환의 중개 알선이나 대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정의
- 디파이 프로젝트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 / 거버넌스 토큰은 본법상 가상자산 범위 해당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 담보대출. 탈중앙화 거래소(DEX).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 등 대부분 형태는 VASP에 해당하여 관련 규제 충분히 적용 가능
- 한편,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역시 대부분 중개, 경매 등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등 대가 지급 전 제로 거래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아 본법상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큰 무리 없음
- 최근(2021. 3.) 발표된 FATF의 가이드라인 수정(안)에서도 NFT,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 금융(DeFi) 등 개념어가 추가되었고, 탈중 앙화 플랫폼이 고객확인의무(KYC)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포함
 - * 해외 업계에서는 디파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며, 관련 내용이 향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법령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



02 세법

③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 현행 및 과세 필요성 >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에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 * 내국법인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
- ⇒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 필요

(1) 거주자에 대한 과세

- □ (소독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중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 (교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취득기액' + 부대비용)
-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 법사행전보유기상자산취득기막특례: 취득기막 = Max(입증된실제 취득기막, 법사행전날시기)
- o 기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고써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피세

□ (세율) 20%

-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 (원천징수세액)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3)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특정금융정보법」시행(21.3.25.)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 감안
- < 그림 4.20 : 2020년 세법개정안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출처: 기획재정부) >

■ 과세당국은 2020. 7. 22.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포함

-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 부대비용 등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삼아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시 20% 세율로 분리과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신고유예 기간(6개월) 고려 2022년 1월 이후 양도부에 대해서부터 과세
- 한편, 2020. 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년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넘는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 부과(불이행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 디파이 프로젝트(특히, 담보대출 유형)의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탈중앙화 거래소 역시 이용자간 P2P 형태 매매 단순중개할 뿐 양도대가 지급하는 자로 보기 애매 이용자들로부터 원천진수세액 상응한 현금 징수할 방법도 여의치 않음
- 위 세법 개정안은 수년 전부터 국내 영업 수행하며 금융기관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약 체결하여 과세 포착 용이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그 이용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디파이 프로젝트 운영 주체 및 그 이용자들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직접적인 과세 이슈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사료됨



03 자본시장법(증권형 토큰 논의 포함)



< 그림 4.19 : 스테이블코인의 각 유형 (출처: 디사이퍼(DECIPHER))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 금융투자상품은 이익 얻거나 손실 회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지급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 그 중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발행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이든 추가 지급의무 부담하지 않는 것
 - *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하고 주로 타인 수행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 표시된 것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 미국 SEC Howey test{① 자금(가상자산 포함) 투자, ② 위 투자로부터 수익 달성 합리적 기대 존재, ③ 투자한 자금 공동기업 속할 것, ④ 타인 노력 여하에 따라 수익 발생}
- SEC 산하 FINHUB 가상자산에 Howey test 적용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②, ④ 강조)
- 현재,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 발행/거래 중 가상자산 중 일부(예: 스테이킹 시 그 대가로 일정 비율 수익 등 리워드 제공하는 방식의 토큰 /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되어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가치 변동성 존재하여 투자 시 원본 손실위험 존재하는 경우 / 소위 이자농사(yield farming) 활용 스테이블 코인 등)는 증권 개념 부합될 여지 없지 않음. 또한. 이는 대부분 미국 SEC 등 제시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요건 충족함.
- 다만,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이 지난 수년간 스테이블 코인 포함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아 관련 규제 적용하거나 동법 위반으로 의율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고(시장에 의도치 않은 시그널 줄 가능성 고려?), 이러한 경향은 쉽게 바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



04 전자금융거래법

- 스테이블코인 등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mark>선불전자지급수단*</mark> 해당 여부가 자주 문제됨
 - *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함)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정표에 관한 정보
 - **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 현재 활발히 거래, 유통 중인 대부분 가상자산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될 경우 많지 않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 최소화 위해 법정화폐 내지 가상자산 관련 정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범용성 요건 갖추면 본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해당될 여지 상대적으로 높음
- 다만, 본법상 특정 선불전자지습수단이 특정 건물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하거나, 가맹점 수 10개 이하인 경우 등에는 등록의무 면제되므로, 적절한 범용성 조절 통해 규제 회피 가능
- 한편, 스테이블코인 중 법정화폐 담보 발행되고 보유자가 그 요청에 따라 발행주체로부터 이를 반환하는 대신 담보가치 상응 법정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본법상 전자화폐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려면 500개 이상 가맹점에서, 5개 업종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하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대부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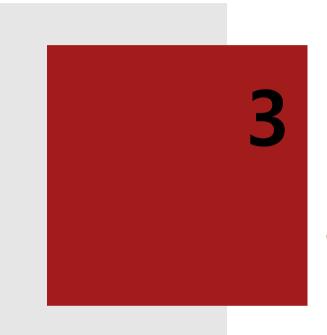
- 일각에서는 디파이 프로젝트 중 소위 담보대출 플랫폼 관련 대부업법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 존재함
- 그러나, 동법상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금전'은 우리나라의 법 정통화로 이해되고 있음(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등).
- 또한, 본법의 제정 취지 및 배경(사적금융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법추심 금지 및 이자율 제한 등), 디파이 프로젝트 중 담보대출 플랫폼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담보가치 하락 시 자동 청산 이뤄져 불법 추심 상정 어려운 점 등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020. 8.부터 시행 중인 본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는 투자자와 가상자산 연계 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본법은 대부업법과 달리 투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이 아닌 '자금'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받는 경우 한하여 본법상 계약체결 금지대상 취급
- 따라서,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라 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가 상자산 대신 (법정통화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이상 본법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디파이 프로젝트 등 관련 형사 규제

관련 규제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 운영 주체도 포함 가능)는 **불법재산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 (제4조 제1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제4조의2), 고객 확인 의무(제5조의2) 등 부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 락처 등 신고해야 하며(제7조 제1항),

위 각 보고의무 이행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제8조)

위반시 효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될 수 있고,

법인 대표자나 사용인이 그 법인 등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 법인에게도 벌금형 병과

• 한편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조치 및 고객 확인의무, 각종 보고의 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부과



02 형법 및 특별형법상 죄책(특히, 사기죄)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상, 지난 수년간 ICO나 초기투자 과정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송금 등 관련 발행주체 또는 중간 모집책들에게 가장 빈번히 적용된 주요 죄목 중 하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포함)
-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인데, 대법원이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통해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하급심 법원은 가상자산이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시
- 따라서,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백서나 텔레그램 등 소통 채널 통해 사전에 알린 것과 전혀 상이하거나 애당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 운영할 계획 또는 능력 없었음에도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경우 관련자들에게 사기죄의 죄책 성립 가능
- 한편, 최근 대법원은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이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되어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 * 이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운영주체가 이용자들이 거래 위해 전자지갑 등에 미리 충전해 둔 가상자산 수량 허위 입력하는 경우 등 동일 죄책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는 P2P 방식 이뤄지고 그 거래내역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시스템 등재되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할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03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 본법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 따른 인/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 위로서 ①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 ② 장래 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제2조).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제3조)
- 가상자산 투자 등 관련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준 이상 수익률 보장된다거나 원금손실위험 없다는 등 약속하고 원화 등 금전을 받아 본 법 위반으로 의율된 사례는 매우 많음. 문제는 디파이 프로젝트와 같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대상이 오로지 가상자산 뿐인 경우**임.
-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816 판결은 해당 사건 투자자들이 오로지 관련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였던 사정, 위 사업 수익 실현절차는 위 가상자산의 취득 뿐 아니라 이를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사업에서의 가상자산은 투자금 및 수익금 산정의 수수 단위 내지 매개로 활용된 것일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본법상 자금의 조달)인 것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 없는 한 해당 법리가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법원 역시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통해 "유사수신행위법 입법목적 및 법률 규정상 '출자금' 용어 의미에 비춰 보면, 실질 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 거래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해당 법리에 따라 가상자산 매개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도 있음(광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1056 판결)

^{*} 따라서 스테이킹 대가로 다른 가상자산이 주어지고 그러한 가상자산에 어느 정도의 거래성 등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이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법상 출자금을 받은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04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수년전부터 국내/외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들간 주요 가상자산들의 거래가격에 일시적으로 상당 수준 괴리가 발생(예: 김치 프리미엄)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해외 전송 및 현금화를 통해 소위 무위험 차익거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소위 불법 환치기 해당 여부가 자주 문제되었는데, 수사당국은 원화 등 환전, 송금 등이 매개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가상자산의 해외전송 등만 문제된 경우 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함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 2년간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전수조사해보면, 그와 같은 사례는 총 15건으로 그 중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모두 원화 등의 환전. 송금 등이 결부된 사안에 관한 것이었음
- 위와 같은 수사당국의 입장과 법원의 태도,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의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달리 오로지 가상자산 그 자치의 전송 등만 이루어지는 비중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외국한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단, 테더(USDT) 등 발행주체에게 요청 시 이를 법정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를 매개로 한 국내/외 전송 행위에 대해서까지 외국화거래법위반 해당 여지가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 나아가 우리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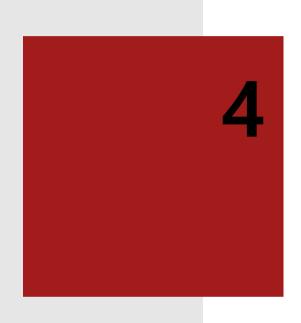


0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임
- 다만, 지금껏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근래에는 디파이 프로젝트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하여 본법 위반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출현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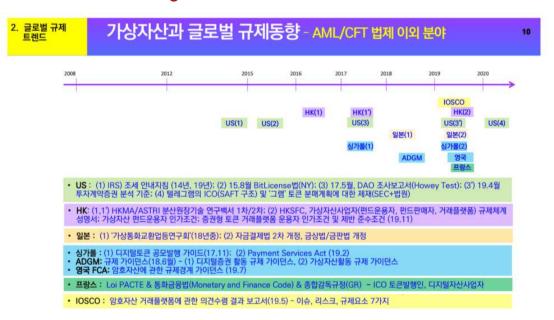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에 관한 소고

○1 (보론) 가상자산 법제 도입 관련 국외 현황



< 그림 4.21 : 가상자산과 글로벌 규제동향 >

(출처: 이해붕, 디지털 자산 규제 감독과 FATF 권고사항 이행방안(2020, 8, 27,) 제10면)

■ 해외 국가들 중에는 가상자산 관련 주체들과 이들의 다양한 행위 유형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손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성격의 법률 내지 규제(가이던스 등 권고안 포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적 사례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2020, 9, 24,)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의 초안을 담은 디지털금융 패키지를 발표한 유럽위원회(EC) 등을 들 수 있음.



02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론 대두 및 그에 대한 평가, 제언 등

- '업권법'은 정식 법적 용어 아니고 그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알려진 바도 없음. 이는 종래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 금융거래법 등 다수 금융업종의 경우 저마다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 규율되던 상황을 고려해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적 성격의 법률을 일컫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산업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당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별법률, 즉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대두되었음.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19. 3. 25. 의원입법을 통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2020. 9. 22. 동일 표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다시 제출되었음. 다만,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서 가상자산 활용 금융서비스 등과 무관하다는 평가도 있음.
-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 규율 위해 기존 법제도상 유사 개념을 활용하여 여러 개별적 법률을 통해 규율해볼 수도 있고, 그 경우 법률가의 입장에서 기존 법률 규정의 문언 및 판례 등 통해 집적된 법리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은 종래 법제도 마련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기존 개념, 법리 등 적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부분 계속 발견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계와 법집행기관, 규제당국 및 주무부처 등 사이에 상당한 다툼 소지 발생될 수밖에 없음
- 반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하여 관련 개념 및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정의해두고 타 법률과 충돌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 업계 종사 자들과 법률가 모두에게 예측가능성 부여할 수 있음. 또한,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기존 법률 규정상 입법 공백 발생하더라도 그때마다 다수 법률 개정하는 것 보다는 업권법만 개정하는 편이 훨씬 용이함. 이러한 측면 고려 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는 타당한 측면이 큼



END OF DOCUMENT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정수호 shj@lawren.co.kr

